서울특별시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의 안 번 호 1038 2019. 12. 18.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

1. 제안경위

○ 2019. 9. 26. 김태수 의원 1인 발의 (2019. 10. 22. 회부)

2. 제안이유

○ 시장은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○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5조의2 신설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5. 검토의견

○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'건강에 관한 정보'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김태수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.

현	행	개 정 안
<u>〈신 설〉</u>		제5조의2(민감정보의 처리) 시장은 제5 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 리할 수 있다.

- ○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3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건강, 정치적 견해 등에 관한 정보,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 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(이 하 '민감정보')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예외적으로 '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'에는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(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3 조제2항제2호, [붙임] 참조).
- 이에 따라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'주거약자법 시행령')이 최근 개정(2019.8.6)¹)되어. 시·도지사가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

^{1) 「}주거약자법 시행령」 제10조의2(민감정보의 처리)

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(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는 법 제7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 보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9. 8. 6.]

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.

- 이에 이 개정조례안은 주거실태조사 시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단순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별도의 쟁점사항은 없음.
 - 참고로, 「주거기본법 시행령」제17조에서는 주거실태조사 등을 위해 필요시 민감정보와 함께 '고유식별정보2)'도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('19.8.6)하였는데, 이는 장애인, 고령자, 수급가 구 등 주거지원 대상의 실태파악을 통해 이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마련토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파악됨. (붙임-2.참조)
 - 유사한 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조례안이 건강관련 민감정보만 처리할 수 있게 한 것은 상위법령인 「주거약자법 시행령」 개정사항에 따른 것인 바, 향후 주거약자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건의를 통해 실태조사 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.

담 당 자	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윤 은 정		
연 락 처	02-2180-8208		
이 메일	urbanth@seoul.go.kr		

^{2) 「}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

【붙임-1】관련규정

○ 개인정보 보호법

제23조(민감정보의 처리 제한)

-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·신념, 노동조합·정당의 가입·탈퇴, 정치적 견해, 건강,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,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(이하 "민감정보"라 한다)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6. 3. 29.>
- 1.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
- 2.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

○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

제18조(민감정보의 범위)

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"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. 다만,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. <개정 2016. 9. 29.>

- 1.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
- 2.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

○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0조의2(민감정보의 처리)

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(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는 법 제7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<u>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/u> [본조신설 2019. 8. 6.]

【붙임-2】「주거기본법 시행령」규제영향 분석서(개요, 국토교통부)

기본 정보	1.규제사무명	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준			
	2.규제조문	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7조			
	3.위임법령	주거기본법			
	4.유형	강화	5.입법예고	'19.5.15~'19.6.24	
	6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	장애인,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을 위해 개인 건강 등 민감정보, 주민등록번호·여권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취급이 불가피하나, 관련 규정 부재로 원활한 주거복지정책 추진에 어려움			
규제의 필요성	7.규제내용	기존 주민등록번호 취급허용 뿐 아니라, 건강 등 민감정보, 여권번호·외국인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, 민감정보 및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주거실태조사도 추가하는 등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기준 강화			
	8. 피 규제 집 단 및 이해관계자	주거지원정책 대상이 되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음			
	9.규제목표	장애인, 고령자, 수급가구 등 주요 주거지원 정책 대상의 실태를 파악하고, 이들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등 주거지원 강화			
규제의	10.영 향평가 여부	기술영향평가	중기영향평가	경쟁영향평가	
	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
적정성	11. 비용편익 분석 (정성분석)	장애인, 고령자 등 정책지원 대상의 개인정보 침해우려는 있으나, 이를 통해 주거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거지원 정책을 수립·지 원함으로써 주거복지 강화라는 공익 달성의 편익이 보다 큼			
	12.일 몰설 정 여부	미설정			
기타	13.원칙허용· 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	해당없음			